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 민병주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현행 조례에서는 용도지역에 무관하게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2.5배만큼 용적률을 완화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 준주거지역 등 용적률이 고밀한 용도지역일수록 적용이 불리한 특성이 있어 적용계수 조정을 통해 완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량 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계산식으로 정리하였고,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완화량 산정을 위한 적용계수를 달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.

- 또한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이 완화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